

서울특별시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한 「지방세기본법」 개정 촉구 건의안 제안 설명

□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현찬 위원장님!

선배·동료 위원님 여러분!

김 용 석 의원입니다.

「서울특별시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한 「지방세기본법」 개정 촉구 건의안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.

□ 서울시는 자치구간 세입격차를 줄이기 위해 2008년부터 ‘공동과세제도’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.

공동과세제도는 자치구세인 재산세를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동세로 서울시 전체의 재산세를 과세하여 그 중 50%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하여 이를 25개 자치구에 균등배분하는 방식입니다.

□ 재산세 공동과세분의 비중은 2008년 40%, 2009년 45%, 2010년 50%로 순차적으로 확대된 후 10년째 50%의 비율을 유지해오고 있는 사이에 2020년 수입규모는 강남

6,512억원 강북 298억원으로 21.8배 격차가 더 벌어졌으며, 공동과세분을 적용하더라도 강남 3,870억원, 강북 763억원으로 5배 이상 차이로 재정불균형은 날로 심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.

□ 이에 본 건의안을 통하여

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, 「지방세법」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액 중 특별시분 재산세액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조정하는 「지방세기본법」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건의하려는 것입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

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